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11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처분 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처분사유 (공사명)	처분내용	처분근거
삼흥건설 산업(주) (진태호)	토목공사업 (04-0013)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49-10, 101호	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(골노달지구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토목공사 (2차)중 그라우팅공사)	과태료 (금40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9조 제3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